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6-4
----------	------

제출년월일 : '96. 2.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총무과)

1. 제안이유

-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부합되게 하고
-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857호('95. 12. 29))

3. 주요골자

- 국내여비규정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현장지도여비, 이전비, 근무지내출장의 현지교통비의 항목을 동조례에서 삭제하고
- 동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준용규정을 국내여비규정준용과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분리하므로써 준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음.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2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